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54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이소영・박용갑・박지원

맹성규 · 김태년 · 복기왕

조승래 · 염태영 · 김성회

채현일 • 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상당한 완성도를 갖춘 자율주행자동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당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경쟁국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기술력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자칫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경쟁에서 뒤 쳐질 경우 국내의 자동차산업 기반 자체가 급격히 붕괴될 수도 있다 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산업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성도가 높아져 상용화가 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감소와 그로인한 각종 사회적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하는데,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상당한 까다로워 연구개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원본을 활용하 고 있으나 그 과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임.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불가피한데, 적어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만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시스템개발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술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 13. "자율주행 영상정보"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영상정 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이하 "영상 정보"라 한다).

법률 제20391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또는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 등"

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과정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처리 등 비식별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활용할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 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 등은 수집한 영상정보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		
	기"란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		
	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		
	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치를 말한다(이하 "영상정보		
	<u>처리기기"라 한다).</u>		
<u><신 설></u>	13. "자율주행 영상정보"란 자		
	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		
	여 촬영된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이하 "영상정보"라 한		
	<u>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391호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제20391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 상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에 관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또는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 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과정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처리 등비식별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 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

자 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도 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 자 등은 수집한 영상정보를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